

2023년부터
이렇게 달라집니다
기업분야 주요 제도·시책

2023



김해상공회의소

2023년 달라지는 기업분야 주요 제도 · 시책

□ 기획재정부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																
		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
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	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• 세액공제 방식 • 자회사 지분을 25%, 해 외자원개발은 5%	■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면제 • 익금불산입 방식 • 자회사 지분을 10%, 해 외자원개발은 5%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제개편안	법인세법 (‘23.1.1.)																
			기획재정부 국제 조세제 도 과 (044-215-4241)																
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	■ 가업상속공제* 적용대상 *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 • 중소기업 • 중견기업: 매출액 4천억원 미만 ■ 공제 한도 <table><tr><th>가업영위기간</th><th>공제 한도</th></tr><tr><td>10년이상~20년미만</td><td>200억원</td></tr><tr><td>20년이상~30년미만</td><td>300억원</td></tr><tr><td>30년이상</td><td>500억원</td></tr></table> ■ 피상속인 지분요건 • 최대주주*&지분50% 이상 (상장법인 3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 *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 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	가업영위기간	공제 한도	10년이상~20년미만	200억원	20년이상~30년미만	300억원	30년이상	500억원	■ 적용대상 확대 • (좌동) • 중견기업: 매출액 5천억원 미만 ■ 공제 한도 상향 <table><tr><th>가업영위기간</th><th>공제 한도</th></tr><tr><td>10년이상~20년미만</td><td>300억원</td></tr><tr><td>20년이상~30년미만</td><td>400억원</td></tr><tr><td>30년이상</td><td>600억원</td></tr></table> ■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• 최대주주&지분 40% 이상(상장 법인 20%) 10년 이상 계속 보유	가업영위기간	공제 한도	10년이상~20년미만	300억원	20년이상~30년미만	400억원	30년이상	600억원	상속세 및 증여세법 (‘23.1.1.)
		가업영위기간	공제 한도																
10년이상~20년미만	200억원																		
20년이상~30년미만	300억원																		
30년이상	500억원																		
가업영위기간	공제 한도																		
10년이상~20년미만	300억원																		
20년이상~30년미만	400억원																		
30년이상	600억원																		
			기획재정부 재 산세제 과 (044-215-4312)																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	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• (적용여부) -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* 초과시 적용 * (중소)50%, (중견)40%, (일반)30% - 증여의제이익=세후영업 이익×(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-A)×(주식보유비율-B) * A(%):(중소)50, (중견)20, (일반)5 B(%):(중소)10, (중견)5, (일반)0	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• (좌동)	상속세 및 증여세법 ('23.1.1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■ (단서 신설)	■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 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기능 ☞ (참고)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제개편안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	■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•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(§29의7) : 고용증가인원×1인당 세액공제액	■ “통합고용세액공제”로 통합 단순화 • (적용대상) 모든 기업* * (제외) 소비성 서비스업 • (기본공제) : 고용증가인원×1인당 세액공제액	조세특례제한법 ('23.1.1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 rowspan="3">구분</th><th colspan="4">공제액(단위:만원)</th></tr><tr><th colspan="2">중소(3년 지원)</th><th rowspan="2">중견(3년 지원)</th><th rowspan="2">대기업(2년 지원)</th></tr><tr><th>수도권</th><th>지방</th></tr><tr><td>상시 근로자</td><td>700</td><td>770</td><td>450</td><td>-</td></tr><tr><td>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 등</td><td>1,100</td><td>1,200</td><td>800</td><td>400</td></tr></table> *청년 연령범위(시행령:15~29세)	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중소(3년 지원)		중견(3년 지원)	대기업(2년 지원)	수도권	지방	상시 근로자	700	770	450	-	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 등	1,100	1,200	800	400	<table><tr><th rowspan="3">구분</th><th colspan="4">공제액(단위:만원)</th></tr><tr><th colspan="2">중소(3년 지원)</th><th rowspan="2">중견(3년 지원)</th><th rowspan="2">대기업(2년 지원)</th></tr><tr><th>수도권</th><th>지방</th></tr><tr><td>상시 근로자</td><td>850</td><td>950</td><td>450</td><td>-</td></tr><tr><td>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</td><td>1,450</td><td>1,550</td><td>800</td><td>400</td></tr></table> -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* 확대,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	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중소(3년 지원)		중견(3년 지원)	대기업(2년 지원)	수도권	지방	상시 근로자	850	950	450	-	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
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(3년 지원)		중견(3년 지원)	대기업(2년 지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시 근로자	700	770	45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 등	1,100	1,200	800	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(3년 지원)		중견(3년 지원)	대기업(2년 지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시 근로자	850	950	45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• ②사회보험료 세액공제(§30의4) :고용증가인원×사용자분 사회보험료×공제율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중소 (공제율)</th></tr><tr><td>상시근로자(2년 지원)</td><td>50% **</td></tr><tr><td>청년*, 경력단절여성 (2년 지원)</td><td>100%</td></tr></table> *청년 연령범위(시행령):15~29세 **전기통신업,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% • ③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(§29의3①) :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×공제율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공제율</th></tr><tr><th>중소</th><th>중견</th></tr><tr><td>경력단절 여성 (2년 지원)</td><td>30%</td><td>15%</td></tr></table> • ④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(§30의2) :정규직 전환 인원×공제액 *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공제액(단위:만원)</th></tr><tr><th>중소</th><th>중견</th></tr><tr><td>정규직 전환자 (1년 지원)</td><td rowspan="2">1,000</td><td rowspan="2">700</td></tr></table> • ⑤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(§29의3②) :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×공제율 *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공제율</th></tr><tr><th>중소</th><th>중견</th></tr><tr><td>육아휴직 복귀자 (1년 지원)</td><td>30%</td><td>15%</td></tr></table> <td> *청년 연령범위(시행령):15~34세 **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-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• (추가공제) :정규직 전환·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×공제액 *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공제액(단위:만원)</th></tr><tr><th>중소</th><th>중견</th></tr><tr><td>정규직 전환자 (1년 지원)</td><td rowspan="2">1,300</td><td rowspan="2">900</td></tr><tr><td>육아휴직 복귀자 (1년 지원)</td></tr></table> - 전환일·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</td> <td></td>	구분	중소 (공제율)	상시근로자(2년 지원)	50% **	청년*, 경력단절여성 (2년 지원)	100%	구분	공제율		중소	중견	경력단절 여성 (2년 지원)	30%	15%	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중소	중견	정규직 전환자 (1년 지원)	1,000	700	구분	공제율		중소	중견	육아휴직 복귀자 (1년 지원)	30%	15%	*청년 연령범위(시행령):15~34세 **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-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• (추가공제) :정규직 전환·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×공제액 *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공제액(단위:만원)</th></tr><tr><th>중소</th><th>중견</th></tr><tr><td>정규직 전환자 (1년 지원)</td><td rowspan="2">1,300</td><td rowspan="2">900</td></tr><tr><td>육아휴직 복귀자 (1년 지원)</td></tr></table> - 전환일·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	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중소	중견	정규직 전환자 (1년 지원)	1,300	900	육아휴직 복귀자 (1년 지원)	
구분	중소 (공제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시근로자(2년 지원)	50% *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년*, 경력단절여성 (2년 지원)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	중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력단절 여성 (2년 지원)	30%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	중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규직 전환자 (1년 지원)	1,000	7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		공제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	중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아휴직 복귀자 (1년 지원)	30%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액(단위: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	중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규직 전환자 (1년 지원)	1,300	9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육아휴직 복귀자 (1년 지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	■ 통합투자세액공제 • 당기분 기본공제(㉠) +투자증가분 추가공제(㉡) - (기본공제(㉠))당해 연도 투자액×기본공제율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3">공제액(%)</th></tr><tr><th>대</th><th>중견</th><th>중소</th></tr><tr><td>일반</td><td>1</td><td>3</td><td>10</td></tr><tr><td>신성장· 원천기술</td><td>3</td><td>5</td><td>12</td></tr><tr><td>국가전략 기술</td><td>6</td><td>8</td><td>16</td></tr></table> – (추가공제(㉡))[당해 연도 투자액-직전 3년 평균 투자액]×추가공제율* *일반,신성장 원천기술:3% 국가전략기술: 4% ▶ 추가공제액 한도: 기본공제액의 200%	구분	공제액(%)			대	중견	중소	일반	1	3	10	신성장· 원천기술	3	5	12	국가전략 기술	6	8	16	■ 공제율 조정 • (좌동) – 기본공제율 상향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3">공제액(%)</th></tr><tr><th>대</th><th>중견</th><th>중소</th></tr><tr><td>일반</td><td>1</td><td>5</td><td>10</td></tr><tr><td>신성장· 원천기술</td><td>3</td><td>6</td><td>12</td></tr><tr><td>국가전략기술</td><td>8</td><td>8</td><td>16</td></tr></table> – (좌동)	구분	공제액(%)			대	중견	중소	일반	1	5	10	신성장· 원천기술	3	6	12	국가전략기술	8	8	16	조세특례제한법 (‘23.1.1.)
	구분		공제액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		중견	중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1	3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 원천기술	3	5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 기술	6	8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공제액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견	중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1	5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 원천기술	3	6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8	8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	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• 일반법인: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% • 중소기업,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: 100%	■ 공제한도 확대 • 60%→80% • (좌동)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제개편안	법인세법 (‘23.1.1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044-215-4221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	■ 손금대상 기부금의 종류 • ❶ 법§24②에 따른 기부금 (명칭없음, 舊법정기부금): 50% 한도 손금산입 • ❷ 법§24③에 따른 기부금 (명칭없음, 舊지정기부금): 10% 한도 손금산입	■ 공제한도 확대 • ❶ “특례 기부금” • ❷ “일반 기부금”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제개편안	법인세법 (‘23.1.1.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044-215-4223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중간에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	■ 법인세 중간에납의무 면제 •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 •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에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	■ 중간에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• (좌동) • 30만원→50만원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제개편안	법인세법 (‘23.1.1.)
			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044-215-4221)
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	(신설)	■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• (적용대상)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*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• (납부유예 기간)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·상속·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■ 증여세 납부사유 • ❶~❺ 해당 시,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- ❶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 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- ❷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- 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- ❹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- ❺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제개편안	조세특례제한법 (‘23.1.1.)
		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	■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• (요건) 자녀가 부모로부터 기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기업을 승계 - (대상) ①중소기업 및 ②중견기업(매출액 4천억원 미만) - (증여자 지분 요건) 최대주주* 등으로 지분 50%(상장법인 30%)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*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• (특례)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~20% 증여세율 적용	■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•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- ①중소기업 및 ②중견기업(매출액 5천억원 미만) - 50%(상장법인 30%) 이상 → 40%(상장법인 20%) 이상 •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*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~20% 증여세율 적용 *기업영위기간 10년 이상: 300억원, 20년 이상: 400억원, 30년 이상: 600억원 - 60억원 이하: 10%, 60억원 초과: 20% • 사후관리 완화 - 사후관리 기간: 7년→5년 - 대표이사 취임: 5년→3년 - 대표이사직 유지: 7년→5년 - (좌동) - (좌동)	조세특례제한법 ('23.1.1.)
	- 30억원 이하 : 10%, 30억원 초과 : 20% • (사후관리)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- (사후관리 기간) 7년 - (기업 유지)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&7년간 유지 - (업종 유지)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- (지분 유지)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	- 30억원 이하: 10%, 60억원 초과: 20% • 사후관리 완화 - 사후관리 기간: 7년→5년 - 대표이사 취임: 5년→3년 - 대표이사직 유지: 7년→5년 - (좌동) - (좌동) ☞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제개편안	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(044-215-4313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																				
			관계 부서																				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	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• (업종) 제조업 등 48개 • (감면율) 5~30% <table><tr><th rowspan="2">본점 소재지</th><th rowspan="2">업종</th><th colspan="2">감면율(%)</th></tr><tr><th>소 기 업</th><th>중 기 업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수도권</td><td>도(소) 매업, 의료업</td><td>10</td><td>-</td></tr><tr><td>제 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</td><td>20</td><td>-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지방</td><td>도(소) 매업, 의료업</td><td>10</td><td>5</td></tr><tr><td>제 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</td><td>30</td><td>15</td></tr></table> *전기통신업,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% 감면 • (적용기한) ‘22.12.31.	본점 소재지	업종	감면율(%)		소 기 업	중 기 업	수도권	도(소) 매업, 의료업	10	-	제 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	20	-	지방	도(소) 매업, 의료업	10	5	제 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	30	15	■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• (좌동) • (좌동) *특례 해지 • ‘25.12.31.	조세특례제한법 (‘23.1.1.)
	본점 소재지			업종	감면율(%)																		
소 기 업		중 기 업																					
수도권	도(소) 매업, 의료업	10	-																				
	제 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	20	-																				
지방	도(소) 매업, 의료업	10	5																				
	제 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	30	15																				
			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(044-215-4132)																				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	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•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	■ 기간 연장 •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 (참고) 기획재정부홈페이지> 보도자료>2022년 세법개정안	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(‘23.1.1.)																				
			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(044-215-4417)																				

□ 고용노동부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	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	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	
		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(044-202-7344)
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	■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 5일 전까지 훈련 과정 인정신청을 하고, 개별 훈련과정마다 사전승인 필요 •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훈련 실시신고 별도 필요, 훈련 과정 변경 시에도 별도 승인 필요	■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·제출하면 훈련과정 별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지원 가능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	(‘23.1월)
			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(044-202-7224)
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	■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 하고, 근로자는 훈련과정 전부 수강 필요	■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,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들어도 훈련비 지원 가능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	(‘23.1월)
			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(044-202-7224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기업직업훈련 카드제 도입	■ 중소기업이 전문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의 10%를 자부담 •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시스템 입력항목 다수 등 행정절차 까다로움	■ 위탁훈련 시 자부담금 10% 면제 • 훈련과정 신청 시 입력해야하는 전산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	(‘23.1월)
			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(044-202-7224)
능력개발전담 주치의 도입	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,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	■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훈련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내고,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와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 및 훈련 컨설팅 지원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	(‘23.1월)
			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(044-202-7295)
최저임금액 인상	■ 2022년 최저임금: 시간급 9,160원(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,914,440원) ■ 최저임금 산입범위 : 상여금 10%, 복리후생비 2% 초과 금액 (월환산액 기준)	■ 2023년 최저임금: 시간급 9,620원(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,010,580원) ■ 최저임금 산입범위: 상여금 5%, 복리후생비 1% 초과 금액(월 환산액 기준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보공개>법령정보>훈령·예규 고시	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(‘23.1.1.)
		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(044-202-7970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	■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 조치사항 중심교육 •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(1시간) •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(2시간) •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 요인과 건강관리(1시간)	■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및 근로자 권리·의무 중심 개편 •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절차(1시간) •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(2시간)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(1시간)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('22.8.18.)
			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(044-202-8937)
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	■ 건설업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• (대상)공사금액 120억원 (토목공사는 150억원) 이상	■ 건설업 안전관리자선임 대상 확대 • (대상)공사금액 50억원 (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)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정보공개>입법·행정예고	산업안전보건법 ('23.7.1.)
			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(044-202-8937)
굴착기 안전기준 신설	(신설)	■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('23.7.1.시행) - 작업 전 후사경 미 후방영상 표시장치 등의 부착·작동 상태 확인 - 버킷,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-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■ 굴착기 인양작업 허용 ('22.10.18.시행) -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,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의 인양 가능 ☞ (참고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보도자료>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” 개정안 공포(10.18.)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'22.10.18.)
			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(044-202-8940)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OEM 위탁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	■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만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 가능	■ OEM 제조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하도록 허용 -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 -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의 MSDS 제출 비공개 승인 의무를 면제	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('23.1월중)
			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(044-202-8966)
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	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별표12] 「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」 1. 유기화합물(117종) 2. 금속류(24종) 3. 산알칼리류(17종)	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별표12] 「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」 1. 유기화합물(123종) 2-니트로톨루엔(특별) - 디부틸 프탈레이트(특별) - 벤조(a)피렌(특별) - 시클로헥실아민 - 와파린(특별) - 포름아미드(특별) 2. 금속류(25종) - 산화붕소(특별) 3. 산알칼리류(18종) - 사붕소산 나트륨(무수물, 오수화물)(특별)	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'23.10.19.)
			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(044-202-8874)

□ 중소벤처기업부

구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	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■ (신설)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조항 신설	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('23.4.19.)
			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(044-204-7786)